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해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위한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

(안 제14조의4)

나.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의 제목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4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신청,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3)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4) 3)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5	50	75
다.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2호	50	100	150
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마.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	법 제69조제	50	100	200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1항제2호의3			
바.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	50	100	200
사.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아. 법 제35조의4제5항의 통보를 받은 <u>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3	<u>100</u>	<u>300</u>	<u>500</u>
자.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차.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의2	500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100	200	300
타.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0	200	300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50	300	500
<u>과</u>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u>한</u>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50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생 략)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요 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통보해야 한 다.
<u><신 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신청,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